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2
----------	-----

2023. 11. 27.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03. 강남구청장(총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1. 27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,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기준을 정비하고, 장기재직 휴가 대상자 확대 및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강남구 공무원 복리증진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18조의2, 안 별표)
 -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,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

-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(안 제24조)
 -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
 - 생일특별휴가 신설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입법예고(2023. 9. 22. ~ 2023. 10. 12.)

가. 제출의견

의견 내용	수용 여부
○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 폐지 -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○ 대통령령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-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· 10일 → 15일 -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 확대 · 연가 가산 적용 재직기간 : 2년 → 5년 · 연가 가산 일수 : 2일 → 3일	수용
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2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과 제24조(특별휴가) 관련 내용과 “별표 3” 과 “별표 4” 의 정비에 관한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8조의2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“영”)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“2년 미만”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“5년 미만의”로 하고 “별표 4” 제2호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하는 규정을 3일 가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 - 현행 제24조(특별휴가) 중 안 제1항은 “별표 3”의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, 휴가 일수가 10일인데, “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” (15일)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 - 제2항의 인용 법령인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”을 삭제하고, 2023년 4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 - 제4항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~ 20년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, 20년 이상 ~ 3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20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개인별 연가 이외에 3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나,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5년 이상 ~ 10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.
 - 안 제24조제12항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신설한 것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범위 내에서,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입안된 것임.
- 다만, 지나치게 많은 특별휴가 등을 부여할 경우, 잔여일수별로 분기 또는 연말 수당처럼 보상(지급)받을 수 있는 연가 누적 일수가 증가할 수 있어 최대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